

#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김 대 응\*

<차례> \_\_\_\_\_

- |                   |                       |
|-------------------|-----------------------|
| I. 서론             | IV.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 인정범위 |
| II. 피보험이익의 개념     | V. 결론                 |
| III.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 |                       |
- 

주제어 : 피보험이익, 이익설, 관계설,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 도덕적 위험, 이익주의, 동의주의

<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의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이 금전으로 계산 가능한 손해보험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금전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손해나 이익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고 있는 도덕적 위험의 증가는 생명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인정되는 동의주의를 기초로 하여 혈족 또는 법률적 특수 관계로 제한을 하는 이익주의 요소를 병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개념과 여러 학자들의 주요 학설 및 견해, 그리고 주요국들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영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인정여부와 지위, 그 범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관점과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을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념 채택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

\*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 논문접수일(2017.06.09), 심사개시일(2017.06.19), 게재확정일(2017.06.23)

## I. 서론

보험제도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다수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이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불안요소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경제주체가 보험계약에 의거 상호 결합 한 후 위험을 분산시키고 우연히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확률계산을 통해 각출을 부담하는 경제시설<sup>1)</sup>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은 선의에 의해 출발한 것이지만 미리 약정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본질적으로 사행성<sup>2)</sup>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제약이 없다면 도박이 목적이 되는 보험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핵심요소로서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ohne Interest keine Versicherung)”라는 말처럼 보험계약의 중심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내지 목적을 정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 재산에 관한 이익일수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이익일 수도 있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갖게 되는 이익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상법 제668조에서는 손해보험상의 피보험이익 만을 간략하게 한정하고 있어 보험제도의 본연의 성격과 빗대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인위적 위험의 초래나 도박보험 등의 방지를 위해서도 인정하여야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 대두되고 있기에 본고를 통하여 피보험이익의 인정여부와 지위, 범위 등을 주요국의 입장과 학설 등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김종국, 「생명보험총론」, 형설출판사, 1996, 51면

2) 사행계약이란 “당사자의 계약상의 출연이 불확정한 급여의무의 인수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급여의무를 구체화하는 조건인 사실의 발생여부, 시기 등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해야 할 구체적인 급부상호 간의 균형관계가 좌우되는 구조의 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행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보험계약과 도박계약이다. 김성태, “보험사업의 개념에 관한 일고찰-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60집, 2001, 132면 ;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집, 2010, 1면

## II. 피보험이익의 개념

### 1. 피보험이익의 의의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의 목적<sup>3)</sup>에 대하여 갖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상법에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에서 피보험이익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다양한 학설로 정의되고 있으며 주로 이익설과 관계설로 대별 되고 있다. 이익설에 따르면 피보험이익은 보험당사자끼리 정해 놓은 보험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재산에 손실이 있게 되고 그 사고가 발생치 않을 시에는 피보험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이익이나 가치를 피보험이익이라고 정의하였다.<sup>4)</sup> 반면 관계설은 독일 및 영미에서 다수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견해<sup>5)</sup>로서 피보험이익을 일정한 사람과 일정한 물건과의 관계라고 한다. 즉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상 예견된 사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sup>6)</sup> 이 의견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와의 관계 내지 상태로 파악하고 피보험이익의 개별화에 도움을 주며, 또한 동일물 상에 전혀 다른 피보험이익을 존재시킬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7)</sup>고 하지만 ‘관계’ 자체를 이익으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sup>8)</sup> 따라서 위 두 가지 학설은 ‘이익의 개념에서 출발하였기에 법률상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면 된다고 생각한다.

3)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계약법 제666조 제1호 등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험의 객체를 의미하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을, 인보험에 있어서는 생명이나 신체가 보험에 부쳐진 사람을 의미한다.

4) 加藤由作, 「被保險利益の意義と種類」, 靑山經營學會, 第2卷 第4號, 靑山學院大學經營學會, 1967, p. 6.

5)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194면.

6)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 593면.

7) 안귀욱,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0면.

8) 김인재,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보험학회지 제20집, 1982, 41면.

## 2. 주요 기능

### (1) 도덕적 위험의 방지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인위적 위험 초래를 방지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가치를 넘어서는 이익은 보상 받을 수 없고 실익 또한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고의사고의 위험은 모든 보험에서 존재 가능하며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고의사고 유발 방지를 위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이러한 피보험이익의 주요 기능을 활용하여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생명보험계약에서도 적극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도박보험 방지

보험계약과 도박은 사행계약이라는 관점에서는 유사하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손실과 그 원래 가치를 잃는 반면 도박은 당해 계약의 사고 결과로도 손해가 없다는 점에서 위 둘은 다르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피보험이익의 기능은 보험과 도박을 분별할 수 있어 도박과 관련 된 보험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 (3)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

손해보험상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상법 제665조) 이러한 책임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액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반면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보험보호가 되는 보험계약상의 법규에 맞는 이익을 가지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거나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4) 보험계약의 동일성 판단 기준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독립한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동일성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물에 관해 여러 개의 피보험이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각각 별개로 독립하여 보험계약이 체결 가능하다.

### Ⅲ.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

#### 1. 주요 법리

##### (1) 피보험이익의 법적 지위

앞서 전술한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말처럼 피보험이익은 보험제도의 핵심요, 중심요소이다. 우리나라 상법 제668조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도 보험계약의 목적이 피보험이익임은 일반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학설상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의 목적이란 이론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 피보험이익의 지위가 절대설인 것이냐 상대설인 것이냐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다.

##### (2)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 상법 제668조에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보험이익을 손해보험계약의 중심요소로만 취급하여 생명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가 다수 위치를 점하고 있다.<sup>9)</sup>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시 보험수익자에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담보해야 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도박의 우려나 의도적인 보험사고를 피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의 방지 차원에서라도 생명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사람이며, 그 사람(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상실, 비용의 지출 또는 그러한 기대 등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보험가입의 목적이라고 볼 때 생명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이란 바로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극적 이익 또는 소극적 이익 등이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다만 생명보험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객관

9) 이응석, “보험계약법상 피보험이익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집, 1994, 91면.

10) 김종국, 「생명보험총론」, 형실출판사, 1992, 66면.

적으로 산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시 보험사고의 정도에 따라 미리 약정해 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 2. 피보험이익의 인정여부

### (1) 피보험이익 부정설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계의 통설로서 우리 상법 제688조에도 규정하였다고 피보험이익의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보험계약의 목적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설의 근거는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과 생명보험에서는 이익이나 손해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sup>11)</sup>는 이유에서이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인정 여부의 문제는 각국의 입법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체적으로 영미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있으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인정여부와 그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로는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 중에서도 적극적 재산보험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와 두 번째 적극적 재산보험은 물론 소극적 재산보험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견해가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부정설에 포함된다.

### (2) 피보험이익 인정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보험이익의 기능적 측면에서 즉 타인의 생사가 도박 행위에 이용될 위험성과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피보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인위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근거로 피보험이익개념을 생명보험에서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sup>12)</sup> 이 학설에 대한 대표적 학자는 E. Bruck, S. Huebner, M. R. Greene<sup>13)</sup>, 일본의 今村有, 木村榮<sup>14)</sup> 등이 있다.

11) 은중성, “생보상품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상품학 연구」 제20호, 한국상품학회, 1999. 6, 154면.

12) 김성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경영법률」 제16권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546면.

13) E. Bruck은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자가 자기 노동력의 보존에 대해 가진 이해관계이다

今村有 박사는 이 학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填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인보험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는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익설에 입각하여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이익관계를 구별하면서 이를 손해보험의 적극재산보험은 물론 소극재산보험 및 생명보험을 포함한 모든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개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도 실질적으로 물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sup>15)</sup> 다만 물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재산적 가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익이지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이익 즉 소유 이익, 사용 이익 등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sup>16)</sup>

인간생명가치론을 주장하는 S. Huebner의 견해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생명에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인간의 생명가치는 개인의 현재의 정당한 소득과 미래의 취득이 확정 가능한 소득을 자본화한 가치로서 파악한다.<sup>17)</sup>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E. Brick도 인간의 가치를 노동력(정신적, 육체적), 부양능력, 수익능력(기대이익 포함) 등으로 금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력에 잠재한 재산적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침해가 생길 경우 거기에는 가시적인 적극적인 손해와 불가시적인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보 받고자 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sup>18)</sup> 따라서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도 손해개념이 없는 것은 아

---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S. Huebner는 인간의 생명가치는 개인의 현재의 정당한 소득과 미래의 취득이 확정 가능한 소득을 자본화한 가치를 피보험이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J. B. Maclean은 인간은 자기 생명에는 무한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M. R. Greene은 생명보험에 서는 일반적으로는 피보험이익은 계약 체결 시에는 존재해야 하지만 손해 발생시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石田重森, 「人保險の被保險利益に關する考察」, 現代保險學の諸問題, 相馬勝未博士 古稀祝賀記念論文集, 專修大學出版部, 1978, p. 367.

14) 石田重森, 前掲論文, p. 361.

15) 이용석,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지위에 관한 검토”, 「해양비즈니스」 제17호,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10, 19-20면.

16) 이용석, “상계논문”, 20면.

17) 김성문, “전계논문”, 547면.

18) 白杉三郎, 保險研究, 新紀元社, 1953, p. 53. ; 石田重森, 前掲書, p. 361; 今村有 「被保險利益概

니고 엄연히 손해는 존재하지만 손해 전보계약이 아니라 정액급부계약인 것은 생명보험상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현실손해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 3. 주요국의 입장

#### (1)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인정국가

##### 1) 영국

영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필수 존재로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1774년의 생명보험법, 1845년의 도박방지법이 있다.

1774년의 생명보험법이 입법화 되면서 타인의 생명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이익이 없는 경우나 도박을 위한 보험은 무효로 하여 생명보험상의 피보험이익을 적용하였으며 1845년 도박방지법(Gaming Act)을 제정하여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영국보험법 제5장(피보험이익)에서는 피보험자의 수족이나 물건을 잃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발생하기에 생명보험상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 2) 미국

미국의 Common Law는 영국의 선례를 모델로 시작하였으나 미국 각 주의 상황이 달라 영국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였다. 1881년 Warnock v. Davis 사건은 생명보험상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사건이 되었고, New York州 보험법 제3205조에서는 사랑과 애정에 의한 본질적 이익과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법적, 실질적, 경제적 이익으로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을 정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보험법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물론 생명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여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애정 기타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익이 없

念の生成とその概念的特徴, 損害保險研究, 第24卷 第1號 ~ 4號, 日本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62, 2, 5, 8, 11.

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일반이익주의를 취하고 있으며,<sup>19)</sup>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여 영국보다는 광의의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 3) 호주

영국의 1774년 생명보험법이 호주에서도 사용되어 왔으며 1945년 피보험이익의 존부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 적지 않아 1984년 피보험이익의 요건의 존속을 전제로 수정·보완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sup>20)</sup> 또한 생명보험영역에서는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피보험이익의 범위를 부양의무가 없는 자에까지 확장하였다.<sup>21)</sup>

## (2)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불인정국가

### 1) 독일

독일 보험계약법 제68조(이익의 흠결)와 제51조(초과보험)에서는 이익을 얻을 목적에 대하여 규제를 하여 두었으며 피보험이익에 관한 규정은 ‘일정한 사고에 대해 부보되어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일정한 관계’이며 이것은 적법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보험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이익을 손해보험에서만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2) 프랑스

프랑스 또한 영미법계와는 다르게 손해보험에 있어서만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법 제L121-6조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은 이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보면,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손해보험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안귀옥, 전계논문, 10면.

20) 김병규, “피보험이익의 인정범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집, 2006, 61면.

21) 김현아, “피보험이익 재론: 영국에서의 피보험이익 폐지논의를 중심으로”, 『호원논집』 제18권, 고려대학교, 2010, 161면

22) 안귀옥, 전계논문, 35면.

### 3) 일본

일본도 상법 제10장 보험편 제630조(피보험이익)에서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나, 생명보험 분야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생명보험 계약편<sup>23)</sup>에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3)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인정여부

위에서 전술하였듯이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은 손해보험은 물론 생명보험 분야에까지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은 자국 보험계약법에 손해보험에 한하여만 피보험이익을 규정하여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에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 편에 국한해서 그 규정이 입법화되어 있을 뿐이고,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거론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동의주의만 운용하다 보면 무능력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체결의 무효에 대한 납득의 어려움이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을 것처럼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기보험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물론 생명보험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 하여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제한 중복보험이나 초과보험에 제한을 두고 피보험이익주의와 동의주의를 병용하여<sup>24)</sup> 운영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up>25)</sup>

23) 일본 보험계약법 제673조 내지 제683조 참조

24) 미국의 Delaware, Utah州 등의 몇몇 州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이익주의(그중 일반이익주의)를 택하면서도 성문법과 판례 등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병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Harnett & Lesnick, op, cit., pp. 2 - 8.

25)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인간의 생명을 가치로 측정하거나 평가를 하기에는 매우 귀하고 소중하여 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오늘날 보험제도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특성으로 살펴 보았을 때 인간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 IV.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인정범위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인정여부는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보험법제는 몇 가지 차이점도 있으나,<sup>26)</sup> 생명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한다.<sup>27)</sup> 이하에서는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의 인정범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시간적 범위

영미법에 있어서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에 대한 시간적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적법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였으면 그 후에 그것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관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험금액도 지급되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sup>28)</sup>

#### (1) 계약 체결시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

영국의 1774년 생명보험법은 주로 동산에 관한 보험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동법 제1조에 의하여 보험의 개시 당시에 피보험이익이 요구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이 되어 무효가 된다.<sup>29)</sup>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함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로서 *Dalby v. India & London Life Ass. Co.*(1854)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이익에 관한 시간적 범위의 문제가 달라졌는데, 이 사건은 Cambridge공작의 생명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이를 재보험 계약에 체결하였고 원보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다.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 가치도 다를 수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26) 대표적으로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에 의한 PPI policies 금지 규정은 미국법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미국에서는 해상보험에서 PPI policies는 적법하다. *Parkington*, op. cit., p. 19.

27) 김철호, “전개논문”, 49면.

28) 미국의, Georgia, Alabama, California 등 20여개 주가 이러한 성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외의 주들도 Common Law에 의해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9) 은종성, “전개논문”, 157면.

라도 재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사고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이다. 당시 생명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이익은 보험증권의 발행 시기에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사고발생시기에 존재함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사건이다.<sup>30)</sup>

## (2)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영국의 1774년 생명보험법 Section 1은 생명보험증권이 유효하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동법 Section 3에 따르면 “피보험이익 가치를 초과한 금액은 보상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 시에도 피보험이익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보험이익의 가치에 대한 보상범위에 관한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시점에도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다른 견해는 소위 Dalby Rule로서 법령상 명시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피보험이익이 보험사고 발생 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보험 계약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아니기에 계약의 성립 시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보상의 범위 역시 그 이익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물론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sup>31)</sup>

미국의 경우 1953년 법률제정 전 Texas州 판례에 의하면, 경쟁원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그의 생명에 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Robert E. Keeton, 1971). 이러한 경향은 앞의 Dalby Rule 이전 영국 법원이 취한 견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Texas Rule은 McCain v. Yost(1955)사건<sup>32)</sup>에서 수정되어,

30) Keeton, op. cit., pp. 171-176.; E. R. Hardy Ivamy, Casebook on Insurance Law, 3rd ed., 1977, p. 236.

31) 상홍규, “배우자의 생명보험에 대한 피보험이익·영·미의 판례를 중심으로”, 『보험조사월보』 198호, 보험감독원, 1997, 119면.

32) L. R. McCain은 1946년 처인 E. McCain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1953년 처와 이혼한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1954년 사망하였다. 그 사이에 1953년 8월 텍사스 보험법이 시행되자 L. R. McCain의 상속재산관리인은 이혼한 전처가 L. R. McCain의 생명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없으며, 이혼이 성립된 후에는 텍사스주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존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수익자의

피보험이익이 보험수익자 지정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는 피보험이익이 상실되었더라도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Texas Rule은 Sector v. Pioneer Foundry Co.(1970)사건<sup>33)</sup>에서 Dalby Rule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당 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사망 시에는 결여되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Dalby Rule이 영미법 모두에서 인정되는 원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 2. 인적 범위

### (1) 자기의 생명보험 계약

#### 1) 인정범위

자기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생명보험 즉, 보험계약 자가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을 말한다.<sup>35)</sup> 영미법상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 대해 무제한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자기의 생명보험계 약 체결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며,<sup>36)</sup> 제한되는 경 우가 있다.

#### 2) 제한사유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한정 하여 도덕적 위험 또는 도박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

---

지정은 텍사스주 보험법 시행이전이었고 피보험자의 사망은 동법시행 이후인 바, 전처에 대한 보험 수익자 지정 시에 피보험이익이 있었다면 그녀는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 이혼배우자 사이에는 피보험이익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33) Pioneer 회사는 Sector와 일정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를 피보험자로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되었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증권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 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Pioneer 회사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던 중 그 해에 Sector 가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 유산관리인인 원고가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보험이익 흠결의 항변은 보험자만 할 수 있고, 생명보험은 일정액의 범위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투자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이 보험증권 발생시에 존재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사망 시 까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4) 은종성, 전계논문, 159면.

35) 김철호, “전계논문”, 50면.

36) Keeton & Widiss, op. cit., pp. 179-180

기의 생명보험은 피보험이익에 제한이 없다보니 자신이 생각한 사람을 피보험이익 유무의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에는 몇 가지 제한사유가 있다. 첫째로는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을 가장한 도박보험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입한 경우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Bromley's Admr. v. Washington Life Co.(1906) 사건<sup>37)</sup>을 예로 들 수 있다(Robert E. Keeton, 1977).

둘째로,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수익자가 모든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통상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수익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행된 경우, 이러한 계약은 도박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볼 것이다.<sup>38)</sup>

셋째로, 우리나라 상법 제732조에는 “15세 미만의 자와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하여 무능력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역시 대다수의 州에서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기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로서 독자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자를 행위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정하고 있다.<sup>39)</sup>

## (2)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 1) 제한의 취지 및 입법례

자기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적을 것이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보험계약 자체가 도박 또는 투기의 목적에

37) 본 사건은 다음과 같다. Bromley와 Bates는 단순한 친구사이였으나 어느날 Bromley는 단지 75달러를 받는 대가로 2,000달러의 생명보험계약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Bates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체결을 허락하였다. 이때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Bromley이었지만 Bates가 보험수익자인 동시에 보험료 납부자였으며 보험 증권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보험계약은 도박보험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Bates는 Bromley의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피보험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romley 자신도 단지 75달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락한 것은 도박보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38) 은종성, 전계논문, 160면.

39) 예컨대 애리조나州에서는 행위능력은 보험증권을 취득하고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용될 염려가 있고, 또한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sup>40)</sup> 이런 근거로 타인의 생명보험이 잘 못 이용될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이익주의, 친족주의, 동의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2) 이익주의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방식으로서,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에 대하여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sup>41)</sup>

이는 금전이이익주의와 일반이익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금전이이익주의는 영국의 입법주의로서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금전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입법주의의 단점은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존부를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일정한 가족관계의 존재만을 계약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sup>42)</sup> 일반이익주의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애정 기타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sup>43)</sup> 현재 미국에서는 자기와 배우자 사이는 물론 혈족관계에 있어서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는 일반이익주의를 취하고 있다.<sup>44)</sup>

## 3) 친족주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친족일 것을 요구하는 친족주의가 있다. 친족주의는

40)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제25호, 2007, 910면.

41) 김철호, "전계논문", 54-55면.

42)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626면.

43)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등의 입법례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용석, 전계논문, 147면.)

44) 이용석, 전계논문, 147면.

보험수익자제한주의라고도 하며 친족 간에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의 살해의 위험성이 없으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어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격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해석에 기초한다.<sup>45)</sup> 하지만 타인의 생명보험 활용을 심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다.

#### 4) 동의주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타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독일,<sup>46)</sup> 프랑스,<sup>47)</sup> 스위스<sup>48)</sup> 및 일본<sup>49)</sup>이 동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상법도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동의주의는 도박보험의 방지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는 미흡하며, 실제 운용상 동意的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sup>50)</sup>

#### 5)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유형

피보험이익에 관한 초기의 대표적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sup>51)</sup>에서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유형을 재산적 이익의 관계와 가족관계로 구분하고 이러한 이익이 없는 경우 그것은 도박계약에 불과하고 그 계약관계를 체결한 자는 피보험자의 조기사망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

45) 박세민, 전개논문, 913면.

46) 독일보험계약법 제150조 2항 :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에서 합의된 급부가 통상의 장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로 되려면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있어야 한다.

47) 프랑스보험법 L.132-2조 1항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제3자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일시보험금 또는 최초의 정기급여액(연금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효이다.

48) 스위스보험법 제74조 1항 : 타인의 생명을 부보한 계약에 있어서 그 사망에 관해 보험에 붙여진 타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이는 무효이다.

49) 일본 보험법 제38조 :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로 되는 생명보험계약은 당해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50) 김선정,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49집, 1997, 305면.

51) Warnock v. Davis, 104 U.S.(14 Otto) 775 (1881); Ibid, p. 179.

럼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범위는 친족관계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주가 되는 거래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애정 관계 만으로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예컨대 부모와 자녀 간의 경우에도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여 대체로 그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고 있다.<sup>52)</sup> 반면 미국 뉴욕주 보험법<sup>53)</sup>에서는 혈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특별한 경제적 이익관계가 없이 사랑과 애정에 기한 실제적인 이익만으로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이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친족관계에서의 피보험이익

#### 가. 혼인관계

아내와 남편은 각각 상호 배우자의 생사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부부라면 자기 배우자의 생명에 관해서는 누구나 피보험이익이 있으며 그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다. 사실혼 관계의 아내(putative wife)도 당연히 피보험이익을 갖게 된다. 하지만 부부의 이혼이나 결혼의 취소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은 없어지게 된다. 만약 이혼을 하였는데 상대 배우자에게 일정한 금전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약혼의 경우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약혼자(affianced husband or wife)는 보험의 혜택을 누리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대의 판례도 있다(Appleman John Alan, 1982 : p. 231).<sup>54)</sup>

#### 나. 부모·자녀관계

영국에서는 미성년의 부모에 대한 피보험이익 인정<sup>55)</sup>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문제에 관한 대표적 사례인 Halford v. Kymer 사건(1830)<sup>56)</sup>이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대표적 사례인 Harse v. Pearl Life Ass.

52) Merkin, Colinvaux's Law of Insurance(7th ed.), p. 341.

53) New York Insurance Law §3205 (Insurable interest in the person); (a) In this section: (1) The Term, "insurable interest" means: (A) in the case of persons closely related by blood or by law, a substantial interest engendered by love and affection.

54) III-Dunbar v. Royal Leogue(1913)

55) Birds & Hird, op. cit., p. 40.; Merkin, Colinvaux's Law of Insurance(7th ed.), p. 341.

Co.(1904) 사건<sup>57)</sup>에서 보듯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또는 성년의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는 각각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하며 이는 재정적 손실이나 금전적 이해가 없으므로 인하여 인정하지 않고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본 경우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상호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 이유는 가족관계인 구성원들이 애정에 의해 결속된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보험이익을 위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판례의 경향으로는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거하지 않는 한 의붓부모는 의붓자녀의 생명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하며, 영국법에 의하면 양부모는 유아의 생명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한다.<sup>58)</sup>

#### 다. 형제자매관계

형제자매의 관계에도 밀접한 친척관계로 보아 상호 자연적 이해관계가 있기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의 다수견해이다.(Appleman John Alan, 1982; p.283).

누이(여동생)는 오빠(남동생)의 인지나 동의에 따라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고, 반대로 남동생(오빠)은 그의 누이와 관계에서 법률상 상속자, 부양관계,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이의 생명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없다. 이점과 관련하여 미국은 자매의 생명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부정함이 보통이며 배다른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morelock v. Aetna Life Ins. Co.*(1953) 판례가 있다.

#### 라. 기타 친인척관계

친족 간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방이 타방에 대해 법률상 강제되어진 부양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즉, 부양의 의무란 것은 금전적 이익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이익은 인정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

56) *Halford v. Kymer*(1830) 10 B&C 724.

57) *Harse v. Pearl Life Ass. Co.* (1904) 1 K.B. 558.; *Shilling v. Accidental Death* (1858) 1 F. & F. 116.

58) 은종성, 전제논문, 163면.

적 의무에 기해서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한 영국과 미국의 판례도 있다.<sup>59)</sup> 이 판결에서는 조카의 양육과 성인이 된 조카의 도덕적 의무로써 양육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조카를 양육한 자는 조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인정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그 범위를 규정하기에 기준이 분명치 않아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거래관계에서의 피보험이익

사업을 위한 거래관계(business relationship)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금전적 이익이 있을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 이러한 유형은 생명보험의 영역이지만 손해의 측정이 가능한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한다.

### 가. 고용관계

사업을 위한 계약 또는 관계에서 서로 상대방이 사망을 하여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았을 때는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고용주는 피용자에 대하여 고용한 기간만큼 급여액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피용자도 고용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그러나 피용자에 대한 고용주의 이익은 정확한 측정이 힘들어서 대체로 중역에 대한 보험가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험은 정액보험으로서 보험자는 피용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영국의 1774년 생명보험법상의 불법적인 도박보험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sup>60)</sup>

### 나. 채권·채무관계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이전 사망할 시에는 채무를 변제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채무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생명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없거나 단순 기대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Hebdon v. West* 사건<sup>61)</sup>이 있다. 또한,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생명에 대해 공동

59) *Barnes v. London, etc., Ins. Co.*, [1892] 1 Q. B. 864; *Cronin v. Vermont Life Ins. Co.*, 20 R. I. 570 (1898).

60) Merkin, *Insurance Contract Law*, A-0454.

61) *Hebdon v. West*(1863) 3 B&S 579; Merkin, *Insurance Contract Law*, A-0455.

보증인의 채무분담비율을 한도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며,<sup>62)</sup> 주채무자의 생명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을 가진다.<sup>63)</sup> 그리고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을 가진다.<sup>64)</sup>

그 밖에 조합관계 또는 동업관계에 있어서도 조합원 상호간 금전적으로 합리적인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 V. 결론

본고는 생명보험상의 피보험이익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과 선진 입법례를 살펴 정리하고자 하였다.

대륙법계와 영·미의 법리로 크게 나뉘어 서로 상충된 사례를 보이는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만 인정하는 대륙법계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모두 인정하는 영·미 법계로 나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과 학설에서는 대륙법계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러한 이유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보험제도가 운용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도 평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마땅치 않다고 보며 보험의 도박화나 인위적 위험의 초래방지를 위해서라도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 제6조<sup>65)</sup><sup>66)</sup>에 명시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서

62) Branfoot v Saunders(1877) 25 W.R. 650.

63) Lea v. Hinton(1854) 4 De G.M. & G. 823.

64) Davitt v Titcumb[1989] 3 All E.R. 417; Dunbar v Plant[1997] 4 All E.R. 289.

6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6조 제2항 :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애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66) 생명보험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시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해당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제6항).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은 2010.1.29. 개정되어 2010.4.1.부터 시행되고 있다.

면동의 철회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래에 향하여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불안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동의주의는 도박보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지만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동의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따라서 본고의 취지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생명보험상의 피보험이익의 필요성과 인정에 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 있었듯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과 지위에 맞게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의 인정으로 인하여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방어하고 인간의 생명을 도덕적 위험에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제도로서의 의미를 살리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미국의 일부 州에서 취하고 있는 피보험이익주의와 동의주의를 병용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정서에 맞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을 입법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인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도덕적 위험 요소의 방지 등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과 선의의 계약자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종국, 「생명보험총론」, 형설출판사, 1992
- \_\_\_\_\_, 「생명보험총론」, 형설출판사, 1996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
-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표준약관, 이렇게 바뀐다!”, 「금감원 이야기」 (통권 제51호), 2010
- 김병규, 「피보험이익의 인정범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집, 2006
- 김선정,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49집, 1997
- 김성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경영법률」 제16권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 김성태, “보험사업의 개념에 관한 일고찰-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60집, 2001
- 김인제,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보험학회지 제20집, 1982.
-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집, 2010
-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제25호, 2007
- 상홍규, “배우자의 생명보험에 대한 피보험이익·영·미의 판례를 중심으로”, 「보험조사월보」 198호, 보험감독원, 1997
- 안귀옥,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은중성, “생보상품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상품학 연구」 제20호, 한국상품학회, 1999. 6
- 이용석, “보험계약법상 피보험이익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집, 1994
- \_\_\_\_\_,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지위에 관한 검토”, 「헤양비즈니스」 제17호, 한국헤양비즈니스학회, 2010
- Wilhelm Kisch, *Handbuch des Privatversicherungsrecht*, Bd. III, 1922
- Wilhelm Kisch, 「Die Lehre von dem Versicherungsinteresse」, 1922

Robert E Keeton & Alan, Widiss, *Insurance Law*,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88

Hardy Ivamy, *Casebook on Insurance Law*, 3rd ed., Butterworths Co., 1977

加藤由作, 「海上保險利益論」, 嚴松堂, 1937

\_\_\_\_\_, 「被保險利益の意義と種類」, 青山經營學會, 第2卷 第4號, 青山學院大學經營學會, 1967

今村有 「被保險利益概念の生成とその概念的特徴」, 損害保險研究, 第24卷 第1號 ~ 4號, 日本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62

白杉三郎, 保險研究, 新紀元社, 1953

石田重森, 「人保險の被保險利益に關する考察」, 現代保險學の諸問題, 相馬勝未博士 古稀祝賀記念論文集, 專修大學 出版部, 1978

<Abstract>

## A Study on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Kim, Dae Woong

In our country, it is mainly accepted that the insurable interest can only be applied to the property insurance because a human life is unmeasurable in terms of money, and therefore it cannot be viewed as a profit or loss. Nevertheless, the rising moral hazard has resulted in the increasing trend of researches show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such hazards by confirming the insurable interests in life insurances as well.

Consequently,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introduce a plan of combining the 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 limited to blood relatives or affiliated persons with the principle of consent as a basis, which is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laws.

Hence,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concepts related to the insurable interests, main theories and opinions of various scholars as well as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necessity for adopting the concept of insurable interests in life insurances in our country by taking comparative approach and considering the theoretical aspects of recognition and scope of 'insurable interests in life insurances' recognized under the Anglo-American laws.

**Key Words** : insurable interest, theory of interest, theory of relation,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moral hazard, 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 principle of consent